

	앵커사업단운영규정	규정번호	3-1-44
		제정일자	2025.03.01.
		개정일자	2026.07.01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한 경민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앵커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능) 사업단은 경기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에 따른 지역 성장에 필요한 인재 양성 및 지역 정주 지원 등 앵커사업 추진의 총괄 업무를 관장한다.

제3조(사업) 사업단은 다음 각호와 같은 사업을 총괄한다.

- ① 경기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의 기획·운영 및 관리
- ② 지역 성장에 필요한 인재양성 및 교육과정 개발·운영
- ③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지·산·학·연·관·민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 ④ 지역사회 및 산업체와 연계한 취업·창업 지원 및 지역정주 활성화 사업
- 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지자체-산업체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
- ⑥ 사업 성과관리, 확산 및 지속가능한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
- ⑦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2 장 사업 추진 체계

제4조(사업추진체계) ① 대학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총장 직속기구로 사업전담조직인 앵커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 ② 사업의 제정에 관한 심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위원회와 재정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 ③ 사업의 지표에 관한 성과관리는 지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 ④ 사업단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와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⑤ 사업단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진행과 관련한 본교의 각 부처 및 센터의 각종 위원회 및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다.
- ⑥ 사업단의 사업은 계획수립, 사업수행, 자체평가, 성과분석, 성과확산 및 홍보, 전략 정비 및 프로그램 개선 등의 환류 절차를 통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제 3 장 사업 운영 조직 및 역할

제5조(사업단) ① 본 대학의 사업단 명칭은 ‘앵커사업단’으로 하며 사업단장 1명, 책임교수 1명, 팀장 1명, 행정전담 2명, 회계전담 1명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② 사업단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운영, 성과지표 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사업비 집행 등 앵커사업단 사업 운영 총괄 및 관리
2. 사업단 산하 거버넌스 관리 및 조정

3. 운영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사업단 운영 규정 및 지침(세칙) 마련
5. 사업비 예산 편성, 집행, 관리 등
6. 본교의 각 부처 및 센터의 각종 위원회 및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 및 반영
7. 기타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6조(거버넌스) ① 앵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역의 산업체, 지자체, 일반대학 및 훈련기관에 소속된 전문가로 거버넌스를 구성 운영한다.

② 거버넌스는 산업체, 지자체, 직업교육 대상자 등에 대한 정규 및 비정규 교육과정 관련 의견 수렴 및 수요분석,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관련 계획, 학습자 진로설계 및 이력관리, 지자체와 산업체 교류 및 지역사회 공헌 관련 계획 등을 수행한다.

제 4 장 사업단 위원회

제7조(앵커사업 운영위원회) ① 앵커사업단의 효율적인 사업운영 및 직업교육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교내·외 전문가를 포함한 총 8인 이내로 구성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교육과정 및 사업단 운영, 기업 지원 등 앵커사업단의 사업추진에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8조(앵커사업 자체평가위원회) ① 사업단은 사업성과의 목표달성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 진행 현황 및 집행 과정의 적정성 점검 및 세부프로그램 추진현황 및 운영성과 평가를 위하여 교내·외 전문가를 포함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공동위원장(교내, 교외) 2인과 교내·외 인사, 직원을 포함해 총 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자체평가위원회는 사업의 중간 및 최종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제9조(임기) ① 운영위원회 및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앵커사업 종료 시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임기는 조정될 수 있다.

제10조(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록)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 5 장 사업 운영

제12조(사업기간) ① 사업기간은 협약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업기간을 벗어난 사업은 집행할 수 없다. 단, 경기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사업 중복성 검토) 앵커사업과 타 재정지원사업과의 예산 중복집행 방지를 위하여 대학의 대학재정사업위원회는 사업 중복성을 검토한다.

제14조(사업계획 수립) ① 사업단은 본 대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지역사회 및 참여주체 간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은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운영위원회 및 본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목표 및 지역 특화분야 선정

2. 사업 추진체계 구성
3. 사업 추진개요 및 세부 추진내용
4. 재정 투자 계획
5. 성과지표 및 관리 계획
6. 그 밖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사업단은 작성된 사업계획서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다.

④ 수정된 사업계획서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사업의 운영) 사업단은 협약체결 내용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성과 달성을 위하여 작성된 사업 계획서상의 사업을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자체평가) ① 앵커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는 사업 전반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7조(결과보고서의 제출) 사업단은 사업 종료 후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업비 편성 및 집행

제18조(사업비의 구성 및 예산 변경) ① 사업비는 경기도에서 교부한 앵커사업비와 기초자치단체 대응 투자금 및 본교의 대응 사업비로 한다.

② 사업비 비목 내 예산 변경은 사업단장의 전결을 득한 내부결재를 통해 변경한다.

③ 사업비 비목 간 예산 변경은 앵커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변경한다.

제19조(사업비의 집행) ① “경기도 앵커사업예산 집행 규정”에 따라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집행하되 본교의 산학협력단 회계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 회계 내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고, 사업비의 입·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해서 별도 통장을 개설하고 관리한다.

③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할 때에는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비목에 따라 구분 계상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인건비
2. 장학금
3. 교육·연구프로그램 개발·운영비
4. 교육·연구 환경개선비
5.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6. 기업 지원·협력 활동비
7. 성과활용·확산 지원비
8.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
9. 간접비

제20조(집행절차) ① 모든 사업비는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에서 관리하며, 사업비 통장에 입금된 국고지원금 및 지방 대응투자금은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원인행위 없이는 인출할 수 없다.

② 사업비는 법인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집행한다.

③ 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한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사업종료 후 5년으로 한다.

제21조(사업비 집행의 제한) 앵커사업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하여 총장이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하고 법률, 법령, 규칙, 훈령, 자체운영 규정, 세부 운영 지침과 국고 관리 및 집행요령에 준하여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집행을 제한한다.

1. 앵커사업과 관련이 없는 단순 투자 및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항목
2. 건물의 신축, 개축, 증축 및 토지 매입(단, 기존 건물과 건축 설비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경비는 가능)
3. 타 재정지원사업의 국고지원금과의 중복 집행
4. 교강사의 개인연구활동 지원 및 연구비에 대한 기관 간접비 집행
5. 학습자모집 활동을 위한 고교 장학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소요경비
6. 사업과 무관한 대학 홍보비 및 행사비, 상품권 등 선물구입비
7. 법인카드 사용제한 사업종목 및 품목(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 적용)
8. 사업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강사 및 직원의 해외연수, 학습자 어학연수, 견학 경비
9. 기타 구체적인 증빙이 불가능한 경비 집행과 교육부 원칙에 어긋나는 집행

제22조(비목별 집행원칙) 사업단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비목별 집행 원칙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3조(사업비 정산) 사업지는 사업계획서에 준하여 관련 서식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영수증은 발행일자, 금액, 발행처 등이 기재된 것에 한하여 인정된다.

제24조(기타) ①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 관련 법률, 법령, 규칙, 훈령 및 본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앵커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목개정 적용례) 본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앵커사업단운영규정으로 제목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RISE사업단운영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